



사법보도준칙

재판에 대한 부당영향 금지

2015-1193 신문윤리강령 위반

내일신문 발행인 장명국

주문

내일신문 2015년 6월 10일자 2면 「국회의원 민생을 말하다-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여객선은 섬 주민에 유일한 교통수단”」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불도저. 전문경영인 출신 박상은 의원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사진)의 별명이다. 그는 대한전선그룹에 입사해 계열분리 이후 대한제당 대표이사 사장과 부회장을 지냈다. 남 다른 추진력을 눈여겨 본 당시 대한제당 고 설원봉 회장의 신임을 받아 그룹분리 과정에서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해냈다.

박 의원의 ‘불도저 추진력’은 2000년 초반 인천 정무부시장 시절 빛이 난다. 송도국제신도시 개발구상에 참여해 밀어붙인 것. 주변의 반대논리도 만만치 않았지만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인천의 내일도 열린다”는 게 그의 소신이었다.

◆섬 주민 지원 법안 처리 주력= 박 의원이 최근 주력하는 법안이 2개가 있다. 모두 섬 주민 지원을 위한 것이다. 대표적 도서지역인 서해 5도가 지역구에 포함돼 있는 사정과도 무관치 않다. 6대째 강화도 토박이에 해군 장교 출신인 그의 ‘본능적 바다사랑’과도 관련이 있다.

하나는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육지의 버스·

지하철 같이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준해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실제 전국의 30만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여객선이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이 지난 2013년 2월 발의했다. 정부가 도서지역 대중교통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여객선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육상 교통수단과의 연계 구축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도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집중돼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야 기싸움에 발 묶인 법안들=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농림식품해양수산위)는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2년째 묶여 있다.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제주도와 연육교로 연결된 섬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원할 예산이 크게 늘면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도의 경우 주교통수단이 항공기이고, 연육교가 연결된 섬은 육상교통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수정안은 상임위원장인 김우남 의원(제주시을) 등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 박 의원은 “30만 도서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소모적인 힘 겨루기에서 벗어나 현실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비슷한 처지다. 이 법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월 박 의원이 행정자치부와 줄다리기 끝에 ‘어구손실 보상’에 합의하면서 입법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한 끝에 처리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두 법안은 서해 5도 어민들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법안”이라면서 “여야의 소모적인 힘겨루기와 지역이기주의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2심 재판서 명예회복”= 최근 그의 또 다른 관심사는 자신의 재판이다. 지난

해 ‘전 운전기사의 돈봉투 신고’ ‘아들 자택서 6억원 현금 발견’ 등의 기사로 떠들썩했던 사건이다. 박 의원은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수사하면서 형평성 구색을 맞추기 위해 친이계 여당 의원인 나를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과 관련해서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로 위기에 몰렸던 박근혜정부는 7·30 재보선에서 압승하자 사정정국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대상 여야 의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실제 1심 재판에서 그는 유죄(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지만, 주요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설원봉 전 회장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8억3000만원, 차명으로 설립한 강서개발을 통해 2억3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전직 운전기사가 신고한 3000만원 돈봉투 역시 개인 돈으로 확인돼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았다. 2심에서는 해운조합이 제공했다는 후원금 300만원의 수수 여부 등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두 번의 총선에서 저를 선택한 지역 주민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다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은 2015년 1월부터 ‘국회의원 민생을 말하다’라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상임위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저평가 된’ 국회의원이나 IT 등 이색 경력의 국회의원을 조명하는 코너다.

위 기사는 16번째 시리즈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의 의정활동과 재판이 진행 중인 그의 항소심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박 의원의 의정활동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항소심에 대해선 그의 일방적 주장만을 싣고 있다. 기사는 『박 의원은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수사하면서 형평성 구색을 맞추기 위해 친이계 여당 의원인 나를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과 관련해서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수사 대상 여야 의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라면서 『실제 1심 재판에서 유죄(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지만, 주요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고 기술했다. 문장 맥락상 박 의원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어 1심에서 무죄 받은 혐의내용은 상세히 기술한 반면 유죄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또 10가지 비위 혐의 가운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객관적인 사실 등도 보도하지 않았고, 현재 항소심에 임하는 검찰의 입장도 전혀 다루지 않았다.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3월 11일 첫 공판이후 보도시점까지 진행 중이었다. 위 기사가 보도되기 이틀 전인 지난 6월 8일에도 공판이 속개됐다. 이 때문에 위 기사는 재판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또한 특정 정치인을 도우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4조 「사법 보도준칙」 전문 및 ①(재판에 대한 부당영향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